의안번호	제 225 호			
의 결	2023년 3월 일			
연월일	(제407회)			

#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이옥규 의원 등 7인			
발의연월일	2023년 3월 7일			

##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(이옥규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 발의연월일 : 2023년 3월 7일

발 의 자:이옥규, 노금식, 최정훈,

김성대, 오영탁, 이태훈,

임영은

#### 1. 제정 이유

O 청원경찰은 근무 장소에서 경찰관 직무를 수행하는 공공업무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민간인 신분의 중간적·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어 처우개선에 미흡한 면이 있음. 이에 충청북도 소속 청 원경찰의 처우개선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여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 내용

- O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(안 제2조)
- O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함(안 제5조)
- O 교육·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7조)
-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0조)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청원경찰법」, 「청원경찰법 시행령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행정운영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첨부

라. 입법예고 : 2023년 2월 24일 ~ 3월 1일(5일간)

## 충청북도 청원경찰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충청북도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처우 개선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  - 1. "청원경찰"이란「청원경찰법」에 따라 임용되어 충청북도 본청·직 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의 경비를 담당하기 위 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.
  - 2. "관리부서"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기관에서 청원경찰의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.
- 제3조(책무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"도지사"라 한다)는 건강하고 안정된 노 동환경을 조성하여 청원경찰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고 권익이 보호되도 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② 충청북도 본청·직속기관·사업소·출장소 및 의회사무처 등 청원경찰을 사용하는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.
- 제4조(청원경찰 관리규정 제정)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복무·인사 등에 대해 별도로 관리규정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- 제5조(기본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충청북도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  - 1. 청원경찰의 현장 대응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
  - 2. 청원경찰의 야간순찰근무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적 요소에 대한 사항
  - 3. 청원경찰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
  - 4. 청원경찰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·홍보에 관한 사항
  - 5. 청원경찰 직무의 적정성 확보에 관한 사항
  - 6.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
  - 7. 그 밖에 청원경찰 후생복지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
-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 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, 정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점검·평가하여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.
- 제6조(직무범위) 청원경찰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민원인 안내 및 출입자 단속
  - 2. 도난, 화재,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
  - 3. 기관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여부 확인
  - 4. 기관 내 차량의 주차 및 교통 방해 요소 제거
  - 5. 청사 경비구역 내 필요한 범위에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 따른 경찰관 직무 수행

- 6. 그 밖에 도지사가 합당한 사유가 있어 지시하는 사항의 수행
- 제7조(교육훈련) ①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정년퇴직일부터 1년 전에 제2 인생을 설계 및 준비하기 위한 퇴직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 력하여야 한다.
- ② 관리부서는 청원경찰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제8조(휴가)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한다.
- ②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정년퇴직일 직전 최대 1개월의 기간 안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.
- 제9조(보수 및 수당 등)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 경비는 청원경찰법령 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 기준액에 따른다.
- 제10조(포상) 도지사는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거나 권 장할만한 행위를 한 청원경찰에 대하여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에 따라 포 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관련법령 발췌

- □ **청원경찰법**[시행 2018. 9. 18] [법률 제15765호, 2018. 9. 18, 일부개정]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청원경찰의 직무·임용·배치·보수·사회보장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원활한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청원경찰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 또는 시설·사업장 등의 경영자가 경비{이하 "청원경찰경비"(請願警察經費)라 한다}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그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경비(警備)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.
  - 1.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와 그 관리하에 있는 중요 시설 또는 사업장
  - 2. 국내 주재(駐在) 외국기관
  - 3.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시설, 사업장 또는 장소
- 제3조(청원경찰의 직무) 청원경찰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 결정을 받은 자(이하 "청원주"(請願主)라 한다)와 배치된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장 등의 구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감독을 받아 그 경비구역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「경찰관 직무집행법」에 따른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4. 5. 20.>
- 제6조(청원경찰경비) ① 청원주는 다음 각 호의 청원경찰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.
  - 1. 청원경찰에게 지급할 봉급과 각종 수당
  - 2. 청원경찰의 피복비
  - 3. 청원경찰의 교육비
  - 4. 제7조에 따른 보상금 및 제7조의2에 따른 퇴직금
-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보수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  - 1. 재직기간 15년 미만: 순경
  - 2. 재직기간 15년 이상 23년 미만: 경장
  - 3. 재직기간 23년 이상 30년 미만: 경사
  - 4. 재직기간 30년 이상: 경위

- ③ 청원주의 제1항제1호에 따른 봉급·수당의 최저부담기준액(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봉급·수당은 제외한다)과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비용의 부담기준액은 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(告示)한다.
- 제7조(보상금)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원경찰 본인 또는 그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  - 1.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부상을 입거나, 질병에 걸리거나 또는 사망한 경우
  - 2. 직무상의 부상 · 질병으로 인하여 퇴직하거나. 퇴직 후 2년 이내에 사망한 경우
- 제7조의2(퇴직금) 청원주는 청원경찰이 퇴직할 때에는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 다만,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퇴직금에 관하여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9조의3(감독) ① 청원주는 항상 소속 청원경찰의 근무 상황을 감독하고, 근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.
  - ② 지방경찰청장은 청원경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원주를 지도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.
- □ 청원경찰법 시행령 [시행 2020. 4. 7] [대통령령 제30603호, 2020. 4. 7, 일부개정] 제7조(복무) 법 제5조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복무에 관하여는 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른다.
- 제11조(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) ①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(算入)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11. 20.>
  - 1.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
  - 2.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
  - 3. 수위·경비원·감시원 또는 그 밖에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해당 사업장의 청원주에 의하여 청원경찰로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
  - 4.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또는 지 방자치단체에서 상근(常勤)으로 근무한 경력

-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은 경찰공 무워의 승급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③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외의 청원경찰 보수의 호봉 간 승급기간 및 승급액은 그 배치된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따르며, 이에 관한 취업규칙이 없을 때에는 순경의 승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- □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[시행 2017. 7. 26] [행정안전부령 제3호, 2017. 7. 26, 타법개정] 제19조(감독자의 지정) ① 2명 이상의 청원경찰을 배치한 사업장의 청원주는 청원경찰의 기회·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한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감독자는 조장, 반장 또는 대장으로 하며, 그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.

#### 비용추계서

#### 1. 사업개요

○ 사업대상 : 청원경찰 50명

○ 도비소요액 : 4.5백만원

○ 사 업 량 : 1인 50만원

O 사업내용 : 퇴직준비교육 지원

#### 2. 비용 발생 요인

○ 평생교육원, 사설교육기관 등 퇴직준비를 위한 교육훈련비

#### 3. 관련조문

O 안 제7조(교육훈련)

#### 4. 비용 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○ 추계기준 : 2023년 공무원 교육훈련비(자율과정) 지원 기준

○ 추계기간 : 향후 5년(2023년~2027년)

#### 나. 추계 결과

- O 산출금액
  - (세입) 0백만원
  - (세출) 4백만원

#### O 산출과정

- ('24) 3명 퇴직, ('25) 2명 퇴직, ('26) 2명 퇴직, ('27) 2명 퇴직 \* ('23) 기본계획 수립 뒤 차년도부터 추진 검토 필요

- 퇴직자 수 x 50만원
- 재원조달 방법 : 도비 100%

## 다. 추계사유

○ 퇴직예정자 발생에 따른 교육훈련비 계상

## 5. 연도별 비용추계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3년)	2차년도 (2024년)	3차년도 (2025년)	4차년도 (2026년)	5차년도 (2027년)
세 입	0	0	0	0	0	0
	0	0	0	0	0	0
세 출	4.5	0	1.5	1	1	1
교육훈련비	4.5	0	1.5	1	1	1